

의안번호	2214975
의 퇴 인	김주영 의원
회 답 일	2025.12.29.
추 계 번호	25B6747

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36조(등록·허가 등의 취소 등)	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8조, 제19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 또는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가 제35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음(제4항 신설)	재량규정
		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(제5항 신설)	재량·의무규정
2	안 제45조의2(사업자협회의 설립 등)	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협회가 사업의 건전한 발전 등을 위하여 행하는 활동에 대하여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(제4항 신설)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36조(등록·허가 등의 취소 등)	—	• 미대상 －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으로 하여금 직업소개사업 또는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,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 등이므로, 개정안의 조치가 시행되어도 현재 고용노동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등의 행정력 범위 내에서 이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2	안 제45조의2(사업자협회의 설립 등)	×	• 미첨부 -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- 본문참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사업자협회¹⁾가 사업의 건전한 발전 등을 위하여 행하는 활동에 대하여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므로, 개정안의 시행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고용노동부 제출자료에 따르면, 2025년 현재 6개 사업자협회가 있으며, 장래에 발생할 추가재정소요는 이들 협회의 활동에 대한 지원 여부 및 지원 내용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나, 현시점에서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기 어려우므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곤란하여 추계에 한계가 있음
 - 따라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1) 제45조의2(사업자협회의 설립 등) ① 제18조·제19조·제23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는 자는 직업소개사업, 직업정보제공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의 건전한 발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.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남 희	김신애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남 희	02-6788-3737	nhee@na.go.kr